

## 결 정

2018 - 103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2. 湖南日報 발행인 김 덕 천

## 주 문

호남매일 2018년 1월 17일자 1면 「5개월 남은 6·13 동시지방선거/‘정치적 간판’ 내걸고 경쟁우위 확보 치열」 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월 17일자 1면 「지방선거 입지자들/‘정치적 직함’ 경쟁」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1.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빅 맨((Big-man)’이 되기 위한 정치적 직함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용 감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타이틀도 엄연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장 후보자 10명 가운데 ‘대통령직속’이라는 직함을 지닌 입지자는 현재까지 2명에 이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민형배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 등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공식기구이고, 지역발전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지역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주도 자립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직속’이다 보니 직책과 역할에 무게감이 남다르다.(후략) 김○○ 기자』

<<http://www.honammaeil.co.kr/article.php?aid=1516114800686713001>>

(湖南日報)=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빅 맨((Big-man)'이 되기 위한 정치적 직함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용 감투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타이틀도 엄연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16일 광주·전남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시장 후보자 10명 가운데 ‘대통령직속’이라는 직함을 지닌 입지자는 현재까지 2명에 이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민형배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 등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공식기구이고, 지역발전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지역고유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주도 자립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직속’이다 보니 직책과 역할에 무게감이 남다르다.(후략) 정○○ 기자』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1229&msection=1&ssection=2&page=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1월 16일 12시50분에 송고한 「“내가 빅 맨” 청와대-대통령 직속 ‘정치적 직함’ 경쟁」 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이	동	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현	갑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 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뀌서는 안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